

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8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05. 3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상위법령 제정(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)에 따른 명칭수정
 - “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” → 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”(안 제3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사업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2조제1항중 “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”을 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”로 하고,
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중 “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”를 각각 “수도권
매립지관리공사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 수수료 부담) ①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 <u>수도권매립지운영 관리조합</u> 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중 생활 폐기물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.	제32조(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 수수료 부담) ①----- ----- ----- <u>수도권매립지관리</u> <u>공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 하는 규격봉투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 집 · 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시 <u>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</u> 부터 부과되는 반입수 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 비로 충당할 수 있다.	③----- ----- ----- <u>수도권매립지</u> <u>관리공사로</u> ----- ----- -----.
④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 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<u>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으로</u> 부터 통보된 업체별 반입처리비용 및 폐기물 유형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업체별 폐기물량에 의거 안분된 반입처리비용으로 같음한다.	④----- ----- ----- <u>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</u> <u>로</u> ----- ----- 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